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890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해상 조난사고 통계의 작성·관리 근거 마련	2
2.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6
3. 보험계약 체결 거부 금지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양도 압류 금지 등 ..	11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이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통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이나 공제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해상 조난사고 통계의 작성·관리 근거 마련

개정안은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¹⁾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계 자료의 작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u> <u>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 <u>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u>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통계법」 제3조(정의) 제1호)

	<u>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의 작성·관리 항목, 공표시기 등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해양경찰청은 효과적인 해양안전 대책과 재난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²⁾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통계 작성·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해상 조난사고 통계 작성·관리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해상조난사고 통계 중 연도별(최근 3년)해상조난사고 현황 총괄, 구조기관별·선종별·유형별·원인별·해역별·기상별 해상조난사고

2) 해양경찰 관할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현황에 대한 통계로서 해양경찰의 해양안전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등 7종의 통계가 「통계법」에 따라 국가승인 통계(일반통계)로 작성 및 공표(근거: 2006년 통계청 승인, 제155007호)³⁾되고 있는데, 지정통계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자료 외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자료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⁵⁾ 해양경찰청은 관련 자료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개정안이 마련되는 경우 사고선박의 제원, 승선원 정보, 과거 사고 이력 등 사고 분석·평가를 위한 정보 획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⁶⁾

유사입법례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해양경찰청, 『해상조난사고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19. 12. 1면 참조.

4)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5)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생략)

6) 현재 해양경찰청이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음.

- ▶ 수협(어선안전조업국·정보통신국) : 사고 어선의 조업지, 업종, 소속, 교신가입국, 보험 등
- ▶ 지자체 : 사고선박의 선박제원(톤수, 마력, 선령, 선질 등), 지역사고 수집 정보
- ▶ 통계청, 선원고용센터: 승선원 정보(연령, 주소지, 국적 등)
- ▶ 소방청, 민간구조협회 : 구조구난 활동 정보(요청 접수, 대응 시작 시간, 구조 장비인원 등)
- ▶ 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과거 사고 및 선체 개조 이력 등
- ▶ 해수부, 환경부, 민간단체 : 선박화물 손상, 환경 피해 현황(유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 등)

구 분	화재발생총괄표	해상조난사고통계
법적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없음
소관부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통계청 승인	1976. 1. 30.	2006. 9. 11.
작성목적	화재발생원인 분석 및 화재예방정책 활용	해양경찰의 해양안전정책 수립 및 학 술연구
작성항목	시도별·장소·요인·월별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등	발생 및 구조 총괄, 사고유형별, 선종별, 원인별, 해역별, 기상별, 월 별, 시간대별, 톤수별, 선질별, 등
작성주기	1년	1년

다만, 안 제4조의제3항에서 통계의 공표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당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공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개정안은 수상구조사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2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생략)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하면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⁷⁾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⁸⁾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통보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8) 시행령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9) 수상구조사가 아닌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약물중독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급, 관정일 등 개인정보 일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있음.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기관의 장	개인정보의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마약류 중독자 또는 치료보호 중인 사람
2. 병무청장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
3.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정신질환으로 전역 조치된 사람
4.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입원·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그런데 현행법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수상구조사 자격 응시자에 관한 정보만이 아닌 기관별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신질환 정보 등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정보 일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관계 부처 또는 기관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바,¹⁰⁾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중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회는 수상구조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침해요인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¹¹⁾

이에 개정안은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확인 정보를 일괄 통보받는 방식 대신에,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경우에 제공받도록 변경함으로써, 수상구조사와 무관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해양경찰청에 부당하게 수집·공유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로 규정하여 최소 수집 원칙¹²⁾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¹³⁾에 위배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법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상구조사 개인정보 침해요인 제도개선 권고('22.9.)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격사유 통보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을 수상구조사 관련자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13)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최소한 예시를 제시하여 어떠한 개인정보
가 요청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보험계약 체결 거부 금지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양도 압류 금지 등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 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장의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도록 하며, 보험금 등 지급 청구권의 양도·압류 및 담보 제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9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①·② (생략) <u><신설></u>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u>
<u><신설></u>	④ <u>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u>
<u><신설></u>	⑤ <u>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u>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

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9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u>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u>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청) ① ----- ----- ----- <u>보험회사등</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0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u>보험등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자</u> 9. 제30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u>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도록 하며, 보험금 등의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의무보험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당한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안전의무보험¹⁴⁾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¹⁵⁾ 해당 기준

14)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

에는 계약 체결 거부 제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등 개정안이 반영하려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보험 계약의 체결 및 거부, 해제·해지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한없이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의 본질적 내용을 위임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보임.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은 행정부가 어떠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므로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에는 누구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임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됨.¹⁶⁾

특히, 문언상 위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해당 행정입법에서 무분별하게 입법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위임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도록 할 것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16) 법제이론과 실제 42p, 국회사무처(법제실)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재난안전의무보험 현황

※ '23년 기준, 20개 기관, 59개 법률, 58종 보험

연번	부처	보험종목	연번	부처	보험종목
1	경찰청	운전학원 종합보험	30	산업부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2	과기부	우주손해배상 책임보험	31		신재생에너지설비 배상 책임보험
3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32		규제특례 사업자 손해배상보험
4		연구실 안전공제	33	소방청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 책임보험
5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34	식약처	의료기기 책임보험
6		실증특례 손해배상 책임보험	35		공유주방 사고배상 책임보험
7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36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배상 책임보험
8		학원배상 책임보험	37		청소년활동 배상 책임보험
9	국토부	항공보험(경량항공)	38		청소년 복지시설 배상 책임보험
10		항공보험(대형항공)	39	원안위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
11		스마트혁신 실증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40	중기부	실증특례 손해배상 책임보험
12		궤도운송 사업자 배상 책임보험	41	해경청	수상레저 종합보험
13		기계식 주차장보수업 배상 책임보험	42		연안체험활동 운전자배상 책임보험
14		항공보험(드론)	43		수상구조사 등 피해보상보험
15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44	해수부	선주배상 책임보험
16	금융위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 책임특약)	45		낙시터업 배상 책임보험
17	노동부	산업재해 보상보험	46		낙시어선업 배상 책임보험
18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	47		선원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19	농림부	승마시설 피해 손해보험	48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보험
20		맹견배상 책임보험	49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21	문체부	야영장업 배상 책임보험	50		해양특수경비원 무기사용 손해보험
22		유원지 배상 책임보험	51		마리나 사업자 배상 책임보험
23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	52	행안부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보험
24		지정스포츠클럽 피해보상 책임보험	53		옥외광고물 배상 책임보험
25		생활체육 안전보험	54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
26	복지부	산후조리원 배상 책임보험	55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27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56	환경부	재난배상 책임보험
28		기부식품등 취식사용 피해 손해보험	57		수렵·포획 배상 책임보험
29		사회복지시설 배상 책임보험공제	58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자)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16(보험 가입)

-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험회사는 보수업자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⑤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